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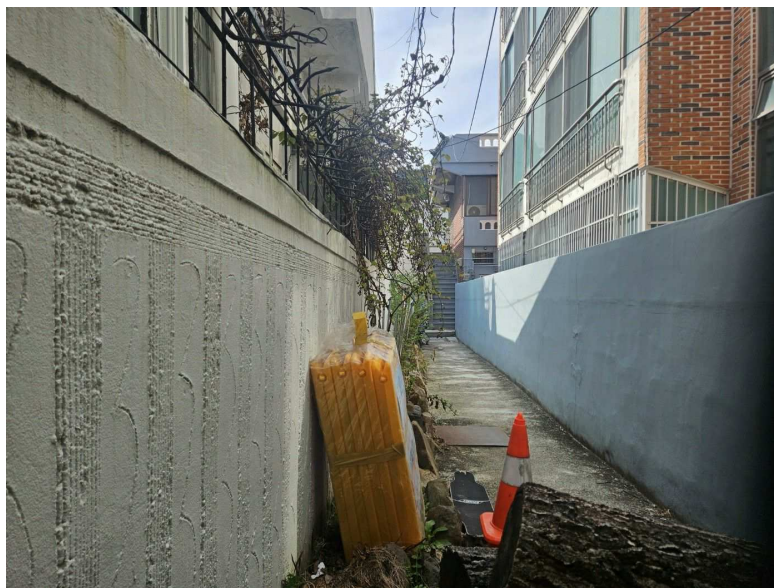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정상호 소유물건(2025타경21631)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감정평가서번호: GR2025-0321-0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박 소 영

감정평가액	육억이천육백이십만삼천이백원정 (₩626,203,2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경매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정상호 (2025타경2163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4.01	2025.04.01	2025.04.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87.10	토지	187.10	3,110,000	581,881,000
	건물	166.23	건물	166.23	260,000	43,219,800
	제시외건물	(21.4)	제시외건물	21.4	-	1,102,400
합 계					₩626,203,2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소재 '안락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임.

###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음.

### 4. 감정평가방법

- 1)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 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3)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가 포착되지 않는 등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 4) 본건 제시외건물은 구조, 현상, 사용자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으며, 면적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음.

##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01일자임.

## 6.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5년 04월 01일자이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2025년 04월 01일자이며, 목록표시근거 상의 공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 7. 그 밖의 사항

- 종물 및 부합물(ㄱ, ㄴ, ㄷ)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 면적 및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 확인하였으며,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 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 및 표준적 사양 등을 참고하였으나 내부 확인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토 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69-7	대	187.1	주거용	2종 일주	소로 한면	자루형 평 지	1,307,000
	합 계			187.1	—				
건 물	기호	구 조		총면적 (㎡)	용 도		층 수		사용승인일자
	2	벽돌조 슬래브지붕		166.23	다세대주택		2층		1988.12.26
	합 계			166.23	—				
제시외 물건	기호	구조		면적 (㎡)	용 도		층 수		사용승인일자
	ㄱ	조적조 슬래브지붕		4.1	다용도실		단층		미상
	ㄴ	샷시조 샷시지붕		8.3	다용도실		단층 (2층소재)		미상
	ㄷ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9.0	창고		단층 (옥상소재)		미상
	합 계			21.4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Ⅲ. 토지가액 산출

###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 2. 비교표준지 선정

##### 1) 선정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 2) 표준지공시지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시기준일 : 2025. 01. 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명장동 102-17	대	145.9	다세대	2종일주	소로한면	정방형 평 지	1,740,000
#B	명장동 69-45	대	139.4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불)	정방형 평 지	1,327,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비교표준지 선정

표준지공시지가 중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 3.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02.28	0.283	2025년도 2월 누계
2025.02.01 ~ 2025.02.28	0.149	2025년도 02월
누 계 (2025.01.01 ~ 2025.04.01)	0.454	$(1 + 0.00283) * (1 + 0.00149 * 32/28) \approx 1.00454$

※ 지가변동률 고시 기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0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유사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개별요인 비교

###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2) 개별요인 비교

기 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00	1.00	1.00	0.75	1.00	1.00	<b>0.750</b>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 판례(2004. 0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2003. 07. 25 선고 2002두5054 외)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 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 2) 가격자료

#### (1) 거래사례

거래 사례 # 1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94-*				
	구 분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개별공시지가(원/m <sup>2</sup> )	거래가격(원)
		용 도		총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자	거래시점
	토 지	2종일주	대	220	1,895,000	858,000,000
	건 물	-		-	-	2023.06.02
토지단가	$858,000,000 / 220 \approx @3,900,000\text{원}/\text{m}^2$ $\text{거래가격} / \text{토지면적} = \text{토지거래단가}$					
토지특성	사다리형 평지, 소로한면					
비 고	토지만 거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 사례 # 2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8-2*				
	구 분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개별공시지가(원/m <sup>2</sup> )	거래가격(원)
		용 도		총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자	거래시점
	토 지	2종일주	대	166.3	2,138,000	820,000,000
	건 물	주상용		493.08	1991.02.12	2024.08.17
토지단가	$[820,000,000 - \{(800,000 \times 16 / 50) \times 493.08\}] / 166.3 \approx @4,170,000\text{원/m}^2$ $[\text{거래가격} - \{(\text{재조달원가} \times \text{잔존연수}/\text{내용연수}) \times \text{건물면적}\}] / \text{토지면적} = \text{토지거래단가}$					
토지특성	사다리형 평지, 소로각지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벽돌조) 슬라브지붕, 지상4층/지하1층					

- ※ 토지단가(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 = (거래가격 - 건물추정가격) ÷ 토지면적
- ※ 위 건물추정가격은 공부상 건물구조의 일반적인 재조달원가에 내용연수 및 잔존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 개별공시지가는 사례의 시점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임.
- ※ 자료출처(실거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토지감정 평가액(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1	명장동 102-53	대	214.8	2종일주 (주거용)	3,080,000	661,584,000	조세 2024.07.24
#2	명장동 67-5	대	209.5	2종일주 (주거용)	2,970,000	622,215,000	법원경매 2023.08.10
#3	명장동 105-59	대	128.6	2종일주 (주상용)	4,020,000	516,972,000	가사소송 2022.10.18

※ 토지단가 = 토지 감정평가액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는 사례의 시점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임.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 (3)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주위환경	표준적이용	접면도로 등	시세수준(원/㎡)	비고
2종일주	주거용	주거용	소로변 (자루형)	3,000,000 ~ 3,300,000원/㎡내외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보정치 산정

### (1) 산정방식(표준지 기준)

$$\frac{\text{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의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의 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2) 사례 선정

선정 사례	평가사례 #1
선정 의견	상기 인근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였음.

### (3) 표준지 #A 격차율 산정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평가사례 #1	3,080,000	1.00	1.01283	1.000	1.330	4,148,957	2.37
#A	1,740,000	—	1.00454	—	—	1,747,900	
사정보정	평가사례로서 적정하다도 판단되며,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거지역】 2024.07.24 ~ 2025.04.01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33	1.00	1.00	1.330
표준지는 사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37
결정 의견	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 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 사례, 감정평가사례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향 보정함.

## 7. 토지 시산가액 산정

### 1) 토지단가 산정

기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m <sup>2</sup> )	결정단가 (원/m <sup>2</sup> )
1	1,740,000	1.00454	1.000	0.750	2.37	3,106,892	<b>3,110,000</b>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시산가액(원)	비 고
1	187.1	3,110,000	581,881,000	—
<b>합계</b>	<b>187.1</b>	—	<b>₩581,881,000.-</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개요

감정평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

### 2. 거래사례 선정

거래 사례 # 2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8-2*				
	구 분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개별공시지가(원/m <sup>2</sup> )	거래가격(원)
		용 도		총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자	거래시점
	토 지	2종일주	대	166.3	2,138,000	820,000,000
	건 물	주상용		493.08	1991.02.12	2024.08.17
토지단가	$[820,000,000 - \{(800,000 \times 16 / 50) \times 493.08\}] / 166.3 \approx @4,170,000\text{원/m}^2$ $[\text{거래가격} - \{(\text{재조달원가} \times \text{잔존연수}/\text{내용연수}) \times \text{건물면적}\}] / \text{토지면적} = \text{토지거래단가}$					
토지특성	사다리형 평지, 소로각지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벽돌조) 슬라브지붕, 지상4층/지하1층					

거래사례 선정의견	위 거래사례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내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 상황과 주위 환경 등 본건과 비교 유사성이 높은 위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 4. 시점수정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거지역	2024.08.17 ~ 2025.04.01	1.115	1.01115

## 5.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결정 의견	동일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개별요인 비교

기 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00	1.00	1.00	0.74	1.00	1.00	<b>0.740</b>
결정 의견	본건은 사례에 대비하여 획지조건(형상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 7. 토지단가 산정

기호	거래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170,000	1.00	1.01115	1.000	0.740	3,120,207	<b>3,120,000</b>

##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187.1	3,120,000	583,752,000	—
합계	187.1	—	<b>₩583,752,000.-</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토지가액의 결정

###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토지	581,881,000	583,752,000	—

### 2. 토지가액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함.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시산가액(원)	비 고
1	187.1	3,110,000	581,881,000	—
합계	187.1	—	₩581,88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건물가액 산출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함.

### 2. 재조달원가의 산정

#### 1) 표준단가 결정

##### (1)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2024년 기준]

분 류	용 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m <sup>2</sup> )	내용연수
01-01-02-09	일반주택	벽돌조/평지붕	3	1,501,000	45 (40~50)
01-01-04-09	일반주택	벽돌조/평지붕	4	1,277,000	45 (40~50)

#### (2) 표준단가 결정

상기에서 제시된 표준단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되, 실제 투하된 공사비용 및 마감자재의 수준, 기본 설비의 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준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구 분	구 조	표준단가 (원/m <sup>2</sup> )	비 고
2	벽돌조 슬래브지붕	1,3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본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구 분	보정단가(원/m <sup>2</sup> )	비 고
2	—	표준단가에 포함

## 3) 재조달원가 산정

상기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보정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구 분	표준단가(원/m <sup>2</sup> )	보정단가(원/m <sup>2</sup> )	재조달원가(원/m <sup>2</sup> )	비 고
2	1,300,000	—	1,3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 결정

### 1) 감가수정 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으로 하되, 건물의 관리 및 이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결정하였음.

### 2) 잔존연수 결정

구 분	사용승인일자	내용연수	경과연수	유효잔존연수
2	1988.12.26	45	36	9

### 3) 건물단가 결정

구 분	재조달원가 (원/㎡)	잔존연수	내용연수	적용단가 (원/㎡)	비 고
2	1,300,000	9	45	260,000	—

## 4. 건물가액 결정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건물가액(원)	비 고
2	166.23	260,000	43,219,800	—
합계	166.23	-	43,219,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V. 감정평가액 및 결정 의견

### 1. 감정평가액

구 분	사정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187.1	3,110,000	581,881,000	—
건 물	166.23	—	43,219,800	—
제시외건물	21.4	—	1,102,400	—
합 계			626,203,200	

### 2. 결정 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 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9-7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7.1	187.1	3,110,000	581,881,000	
2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53번길 31-1	69-7 위지상	다세대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2층	92.1  74.13	166.23	260,000	43,219,800	1,300,000 x 9/45
<b>소 계</b>								<b>₩625,100,800</b>	
(ㄱ)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9-7 위지상	다용도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4.1)	4.1	80,000	328,000	400,000 x 9/45
(ㄴ)	"	69-7 위지상	다용도실	샷시조 샷시지붕 2층소재 단층	(8.3)	8.3	38,000	315,400	관찰감가 150,000 x 9/35
(ㄷ)	"	69-7 위지상	창고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옥상소재 단층	(9.0)	9.0	51,000	459,000	관찰감가 200,000 x 9/35
<b>소 계</b>								<b>₩1,102,400</b>	
<b>합 계</b>								<b>₩626,203,200.-</b>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소재 '안락초등학교' 남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일반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에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1988.12.26),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적벽돌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 및 목재이중창임.

##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 (3)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 (4) 부합물 및 종물

종물 및 부합물(ㄱ, ㄴ, ㄷ)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 면적 및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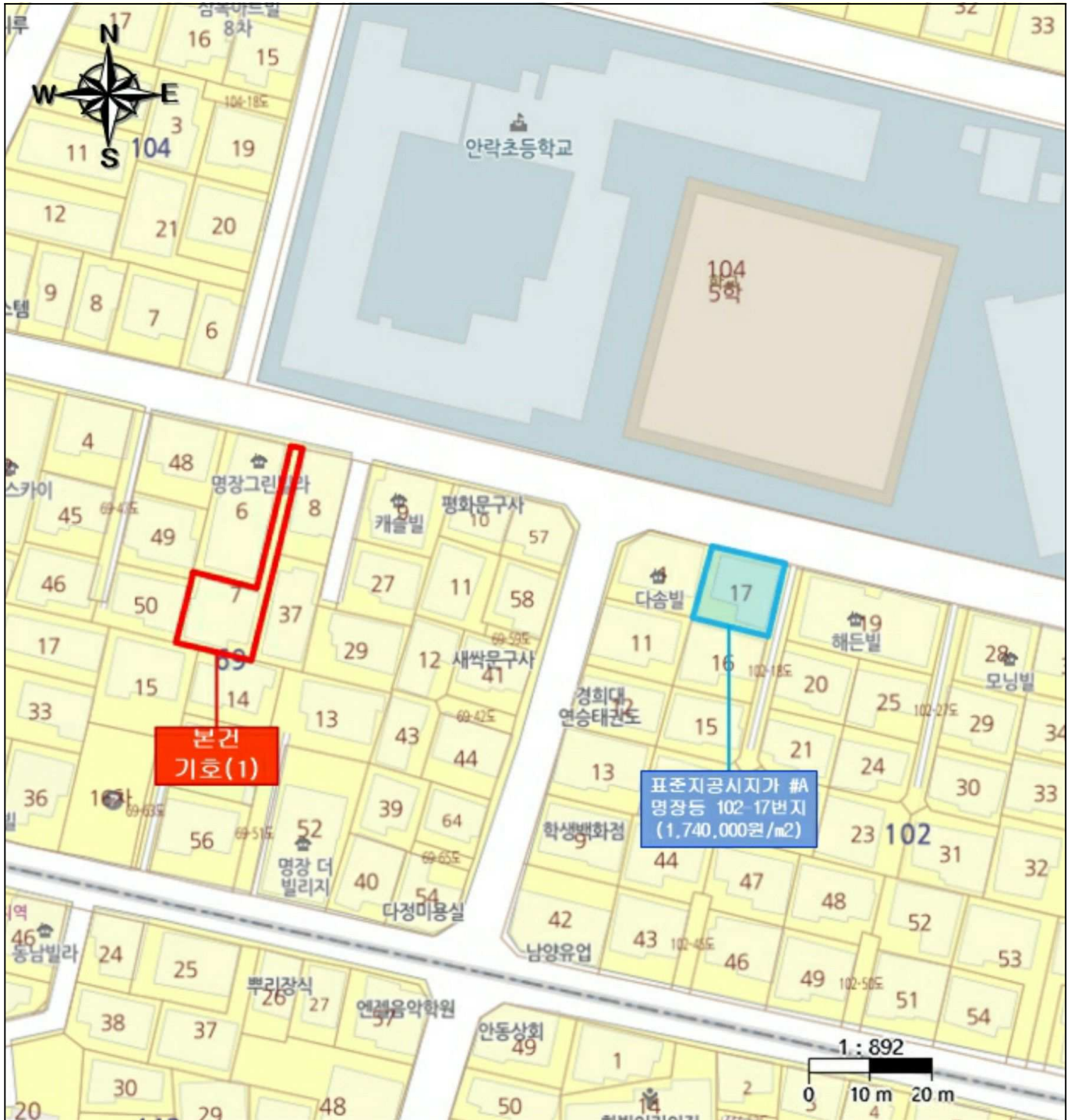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9-7
-----	--------------------



#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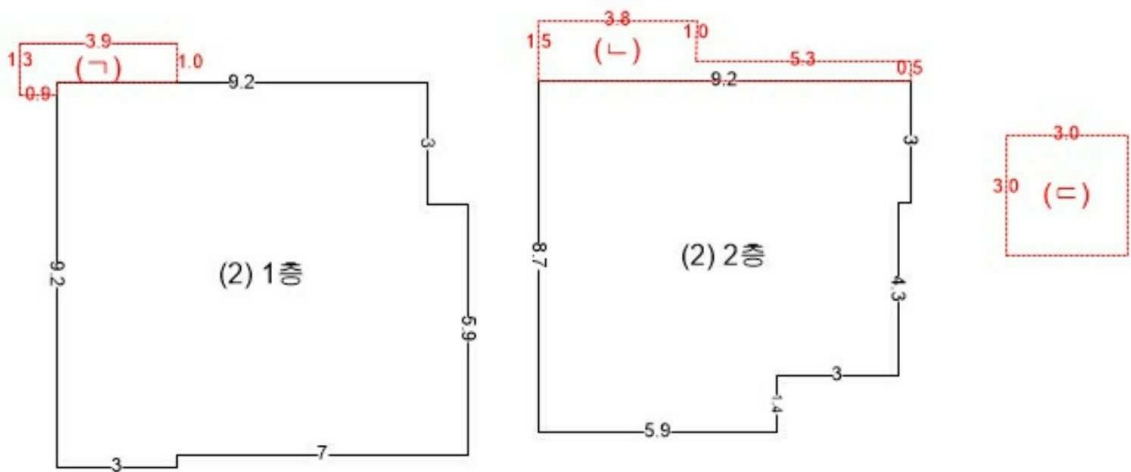
# 지 적 도



# 건물개황도



s = NONE SCALE



**[본건 기호(2)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

1층 : (공부상면적) 92.1㎡

2층 : (공부상면적) 74.13㎡

**[중요 및 부합율]**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다용도실 4.1㎡

(-) 샷시조 샷시지붕 2층소재 단층 다용도실 8.3㎡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옥상소재 단층 창고 9.0㎡





